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7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0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예치금'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40백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,
- 나. 고유목적 사업비(아동·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·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)를 편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170백만원 감액하여 최종 예치금을 418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
구분	당초 (A)	1차변경	2차변경 (B)	증감 (B-A)
계	1,398	1,638	1,638	240
기타회계 전 입 금	600	600	600	-
이자수입	397	397	397	-
예 치 금 회 수	401	641	641	240

지 출 계 획				
구분	당초 (A)	1차변경	2차변경 (B)	증감(B-A) (증감률)
계	1,398	1,638	1,638	240
고 유 목 적 사 업 비	1,030	1,030	1,200	170 (16.5%)
기 본 경 비	20	20	20	-
예 치 금	348	588	418	70 (20%)

※ 1차변경 :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예치금 240백만원 증액

※ 2차변경 : 아동·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·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70백만원 편성(예치금 170백만원 감액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천은진 (☎ 2133-5024)